의왕시의회 훈령 발령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의 왕 시 의 회 의 장 

2022년 10 월 13 일

의왕시의회 훈령 제 8 호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제도화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인사행정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의왕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3조(설치 및 구성) ① 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및 같은 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의왕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4조(기능) 인사위원회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인사교류계획에 관한 사항
2. 인사행정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장의 인사 관장 사항

제5조(비밀유지) 인사위원회에 부의된 사항 중 의장이 공식 발표한 사항 이외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승진

제6조(기본원칙) 상위직 결원 시 보충은 당해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인력의 균형 있는 관리와 승진기회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상호 교류 및 승진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승진후보자 명부작성 관리 및 승진방법) ① 승진후보자 명부는 의장이 작성 관리한다.

② 6급 이하의 승진은 현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순위에 의한 법정배수범위 내의 승진대상자를 인사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선발된 승진대상자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승진발령 전이라도 공개할 수 있다.

④「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자와 승진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당해기간 내에 승진임용할 수 없다.

1. 근무성적이 당해기간 내에 “가”평정을 받은 사람
2. 공사생활에 흠결(공익저해, 윤리성, 품위손상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3. 그 밖에 승진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8조(근무성적평정) ① 근무성적은「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5조부터 제11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따라 평정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 평정대상 공무원별 평정자와 확인자는 별표와 같다.

③ 평정자는 공무원의 동일직급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동점평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전보 및 보직관리

제9조(전보원칙) ① 공무원의 전보는 법령상의 전보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2년 이상 근속한 사람에 한하여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보를 하여야 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하여야 한다.

제10조(특수분야근무자 관리) ①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특수분야에 근무하는 사람 중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당해분야에 계속근무(승진 후 포함)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한 특수분야의 범위는 특정기술을 요하는 업무, 전산, 도시계획, 중장기계획 관련 계속사업 업무 등 장기근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말한다.

제11조(순환보직) ①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개인의 능력 및 적성, 직무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순환보직함으로써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순환보직은 장기근속자를 우선하여 보직한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③ 순환보직의 인사원칙은 가급적 공개한다.

제12조(결원보충) ① 6급 이하 공무원의 결원보충은 당해 공무원 중에서 발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타 기관 공무원의 전입은 자체승진 대상자 및 신규임용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고, 연고지 근무희망자를 우선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징계 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4. 법령에 따라 전보가 제한된 사람

제5장 임용기준 및 비위자 관리

제13조(임용기준) ①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관계 법령에 규정된 임용요건 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정기 또는 수시 인사 시에는 요인, 규모, 임용기준 등을 포함한 인사배경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임용제한) 수시로 발생하는 임용(승진, 전보, 전출·입 등)사유에 따른 인사이동은 그 대상을 최소화하고 정례적인 인사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제15조(비위문책사항 기록관리) 경고, 훈계 등의 비위에 관련한 처분사항은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한다.

제6장 보칙

제16조(의왕시와의 인사교류 활성화) ① 의장은 의회와 의왕시 사이 인

사교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인사교류 시기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 시기는 의왕시 정기인사 일정에 맞추어 하되, 긴급한 인사수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교류시기를 정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회와 의왕시 사이 인사교류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에게 가산점을 주어 평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제8조 관련)

평정대상 직급	평 정 자	확 인 자
5급	부의장	의장
6급 이하	의회사무과장	부의장

[별지 서식]

비 위 관 계 기 록 카 드

○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 비위기록내용(훈계, 경고등)

처 분 당 시 소속, 직위, 직급	비 위 내 용	적발기준	조 치 사 항		기록자 인
			년 월 일	처 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가. 규칙의 목적 및 적용범위(제1조, 제2조)
나.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제3조부터 제5조)
다. 공무원의 승진・전보・보직관리 등에 관한 사항(제6조부터 제12조)
라. 공무원의 임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13조부터 제15조)
마. 인사교류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제16조)